동남 하늘채 에디크 입주자모집공고[입주자모집공고일 : 2025년 06월 13일]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 점 유의 바랍니다. 또한 입주자모집공고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단지 주요정보

주택유형	해당지역	기타지역	규제지역 여부
공공	청주시 거주자	충청북도 거주자	비규제지역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택지유형
10년	1년	없음	적용	공공택지

구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특별공급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당첨자 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025.06.13.(금)	2025.06.23.(월)	2025.06.24.(화)	2025.06.25.(수)	2025.07.01.(화)	2025.07.05.(토)~ 2025.07.09.(수)	2025.08.04.(월)~ 2025.08.07.(목)

Ⅰ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당첨자 발표	서류접수(정당 당첨자)	계약체결
일정	06.23.(월)	06.24.(화)	06.25.(수)	07.01.(화)	07.05.(토)~07.09.(수) (10:00 ~ 17:00)	08.04.(월)~08.07.(목) (10:00 ~ 17:00)
방법	인터넷 청약(09:00 ~ 17:30)			개별조회 (청약 Home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현장 방문 접수	
장소	▪동남 하늘채 에디크 견본주택 (10:00~14:00) /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취약자에 한해 현장 접수 가능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앱 : 청약 Home ※ 스마트폰 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및 애플앱스토어 "청약 Home" 검색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앱 : 청약 Home ※ 스마트폰 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및 애플앱스토어 "청약 Home" 검색 ▪청약통장 가입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동남 하늘채 에디크 견본주택(방문 접수)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3166번지) ※ 예비입주자 서류 접수 및 계약체결 일정은 추후 안내 예정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견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Ⅱ 공급 규모·공급대상 및 공급가격

■ **공급위치** : 동남 하늘채 에디크(동남지구 A2BL)
■ **공급규모** : 지하 3층 ~ 지상 최고 24층, 7개동, 공공분양주택 총 650세대 [일반공급 164세대, 특별공급 486세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65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 65세대, 생애최초 특별공급 : 97세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32세대, 신생아 특별공급 : 130세대,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 32세대, 기관추천 특별공급 : 65세대 포함)]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8년 3월 예정(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통보)
■ **공급대상**

[단위 : ㎡, 세대]

블록	주택형	주택타입	세대당 주택면적(㎡) 공급면적 주거전용	주거공용	공급면적(계)	그 밖의 공용면적 기타공용	지하주차장	계약면적(계)	발코니 확장여부	확장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공급세대수 계	특별공급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	신생아	국가유공자	기관추천	일반공급	최고층수	최하층 배정세대수
A2	합계											650	65	65	97	32	130	32	65	164	24	30
	059.9900A	59A	59.9900	25.5413	85.5313	9.3565	41.5283	136.4161	확장	22.7116	48.4407	476	48	48	72	24	96	24	48	116	24	22
	059.9900B	59B	59.9900	25.5413	85.5313	9.3565	41.5283	136.4161	확장	18.0489	48.4407	151	15	15	22	7	30	7	15	40	24	7
	059.9900C	59C	59.9900	25.5413	85.5313	9.3565	41.5283	136.4161	확장	17.2849	48.4407	23	2	2	3	1	4	1	2	8	23	1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 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발코니 확장면적 등을 포함한 실거주면적은 각 세대 타입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견본주택,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에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 규모 표시방법은 법정 계량 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원, ㎡, 세대]

타입	약식표기(타입)	층별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10%) 계약 시	중도금(60%) 1차(10%) 2025.12.15.	2차(10%) 2026.04.15.	3차(10%) 2026.09.15.	4차(10%) 2027.02.15.	5차(10%) 2027.06.15.	6차(10%) 2027.10.15.	잔금(30%) 입주 시 (주택도시기금 제외금액)	주택도시기금
059.9900A	59A	1층	17	310,100,000	31,010,000	31,010,000	31,010,000	31,010,000	31,010,000	31,010,000	31,010,000	27,030,000	66,000,000
		2층	22	313,400,000	31,340,000	31,340,000	31,340,000	31,340,000	31,340,000	31,340,000	31,340,000	28,020,000	66,000,000
		3층	22	320,000,000	32,000,000	32,000,000	32,000,000	32,000,000	32,000,000	32,000,000	32,000,000	30,000,000	66,000,000
		4층	22	326,600,000	32,660,000	32,660,000	32,660,000	32,660,000	32,660,000	32,660,000	32,660,000	31,980,000	66,000,000
		5층 이상	393	329,900,000	32,990,000	32,990,000	32,990,000	32,990,000	32,990,000	32,990,000	32,990,000	32,970,000	66,000,000
059.9900B	59B	1층	5	310,100,000	31,010,000	31,010,000	31,010,000	31,010,000	31,010,000	31,010,000	31,010,000	27,030,000	66,000,000
		2층	7	313,400,000	31,340,000	31,340,000	31,340,000	31,340,000	31,340,000	31,340,000	31,340,000	28,020,000	66,000,000
		3층	7	320,000,000	32,000,000	32,000,000	32,000,000	32,000,000	32,000,000	32,000,000	32,000,000	30,000,000	66,000,000
		4층	7	326,600,000	32,660,000	32,660,000	32,660,000	32,660,000	32,660,000	32,660,000	32,660,000	31,980,000	66,000,000
		5층 이상	125	329,900,000	32,990,000	32,990,000	32,990,000	32,990,000	32,990,000	32,990,000	32,990,000	32,970,000	66,000,000
059.9900C	59C	1층	1	310,100,000	31,010,000	31,010,000	31,010,000	31,010,000	31,010,000	31,010,000	31,010,000	27,030,000	66,000,000
		2층	1	313,400,000	31,340,000	31,340,000	31,340,000	31,340,000	31,340,000	31,340,000	31,340,000	28,020,000	66,000,000
		3층	1	320,000,000	32,000,000	32,000,000	32,000,000	32,000,000	32,000,000	32,000,000	32,000,000	30,000,000	66,000,000
		4층	1	326,600,000	32,660,000	32,660,000	32,660,000	32,660,000	32,660,000	32,660,000	32,660,000	31,980,000	66,000,000
		5층 이상	19	329,900,000	32,990,000	32,990,000	32,990,000	32,990,000	32,990,000	32,990,000	32,990,000	32,970,000	66,000,000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비용,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및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Ⅲ 신청자격

1. 기관추천 및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25.06.13.(금)) 현재 청주시 및 충청북도에 거주하고 계신 아래 추천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 제1항 제27호의2의 도시활력증진/도시재생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는 제외)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 및 제45조에 의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당첨예정자 및 예비대상자)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된 분
- **(당첨예정자)** 해당 기관에서 사업주체에 '당첨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다른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청약 후 '당첨자'가 되는 분
- **(예비대상자)** 해당 기관에서 사업주체에 '예비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청약하더라도 특별공급 미달 시 추가로 '당첨자' 또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가 될 수 있는 분

추천대상자	입주자저축 구비 여부
장애인, 국가유공자	필요 없음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소기업근로자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 담당기관 : 장애인(충청북도청 장애인복지과), 국가유공자 · 장기복무 제대군인(충북 남부 보훈지청 보상과), 10년 이상 복무군인(국방부 국군복지단), 중소기업근로자(충북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지역정책과)

2.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25.06.13.) 현재 청주시 및 충청북도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④)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태아나 입양아 포함) 2명 이상을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양의 경우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임신의 경우 당첨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임신 및 출산 관련 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 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 당첨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분은 입주 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④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 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 기준(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소득을 말함)"의 120%(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200%) 이하인 분

3.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25.06.13.) 현재 청주시 및 충청북도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⑤)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1순위자(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④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 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 기준(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소득을 말함)"의 120%(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200%) 이하인 분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란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세법」제19조 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함.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포함, 미성년 자녀만 해당. 이하 본 문장에서 같음.)가 1명만 있는 경우 10%p, 2명 이상('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3.03.27. 이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 20%p 가산하여 소득 및 자산기준이 완화되며, 완화 기준은 "<표3> 출산가구 자산보유기준 완화" 및 "<표5>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 완화된 소득·자산 기준을 인정받으려는 분은 출생, 입양, 임신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내용을 증명해야 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격미달일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⑤ 피부양 직계존속을 포함한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있을 경우 그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하며, 신청 시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함)
※ 예시 1 : 공급신청자가 만 65세 이상 노부모(친모), 배우자 및 자녀를 부양하고 있으며, 세대분리된 부(父)가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시 무주택 검증 대상 전원이 무주택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공급신청자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함.
※ 예시 2 : 노부모, 본인(세대주이자 신청자), 1주택 소유자인 누나 및 누나의 배우자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누나는 본인과 직계존·비속 관계가 아니므로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세대구성원이 아닌 동거인으로 간주하여, 공급신청자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함.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서는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공급유형과 달리 무주택자로 인정되지 않음.

4. 생애최초 특별공급

■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25.06.13.) 현재 청주시 및 충청북도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⑥)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한 모든 분이 과거 주택소유 사실이 없는 경우(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에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사실이 있는 경우 포함)로 한정한다]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1순위(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분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재혼 포함)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하며, 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를 말함(신청자의 태아 포함)]가 있는 분
※ 입양의 경우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임신의 경우 당첨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임신 및 출산 관련 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 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 당첨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분은 입주 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분(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에 한함)으로서 신청자 본인이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소득세는 「소득세법」제19조(사업소득) 또는 제20조(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하며, 해당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⑥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 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 기준[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수에 포함)별 가구당 월 평균소득을 말함]"의 130%(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분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포함, 미성년 자녀만 해당. 이하 본 문장에서 같음.)가 1명만 있는 경우 10%p, 2명 이상('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3.03.27. 이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 20%p 가산하여 소득 및 자산기준이 완화되며, 완화 기준은 "<표3> 출산가구 자산보유기준 완화" 및 "<표5>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 완화된 소득·자산 기준을 인정받으려는 분은 출생, 입양, 임신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내용을 증명해야 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격미달일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5. 신혼부부 특별공급

■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25.06.13.) 현재 청주시 및 충청북도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④)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만 7세 미만을 말함. 이하 같음.)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며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한부모가족[6세 이하(만 7세 미만을 말함. 이하 같음.) 자녀(태아를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예비신혼부부) 청약 시 기입한 예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증명서 및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포함된 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을 입주 전까지 사업주체로 제출해야 하며, 미증빙 또는 전 배우자와 재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계약이 해제되며 입주도 불가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을 의미하며,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공고일 현재 자녀 유무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를 말함.(한부모가족증명서를 통해 증명 가능한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 단, 추후 사실혼 관계 등 한부모가족 자격 미달인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취소 또는 해제될 수 있음.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④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 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 기준(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소득을 말함)"의 130%(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분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란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세법」제19조 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함.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포함, 미성년 자녀만 해당. 이하 본 문장에서 같음.)가 1명만 있는 경우 10%p, 2명 이상('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3.03.27. 이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 20%p 가산하여 소득 및 자산기준이 완화되며, 완화 기준은 "<표3> 출산가구 자산보유기준 완화" 및 "<표5>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 완화된 소득·자산 기준을 인정받으려는 분은 출생, 입양, 임신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내용을 증명해야 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격미달일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6. 신생아 특별공급

■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25.06.13.) 현재 청주시 및 충청북도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④)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출생) 당첨서류 제출 시 출산 및 양육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출생 신고 전인 경우 출생증명서), 아동수당·부모급여 수령내역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제출 불가 시 부적격 처리되어 계약체결 불가능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입양) 당첨서류 제출 시 입양 및 양육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아동수당·부모급여 수령내역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 및 양육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주체가 정한 입주기간이 시작한 이후 발급받은 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아동수당·부모급여 수령내역 등)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미제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임신) 당첨서류 제출 시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또한 입주기간이 시작하기 전까지 출산 및 양육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아동수당·부모급여 수령내역 등)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당첨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분은 입주 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아동수당·부모급여 수령내역 등 자녀 양육사실 증빙서류는 공적 서류 및 금융기관 발급 서류에 한하여 인정하며, 그 외 신청결과 문자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④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 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 기준(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소득을 말함)"의 140%(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분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포함, 미성년 자녀만 해당. 이하 본 문장에서 같음.)가 1명만 있는 경우 10%p, 2명 이상('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3.03.27. 이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 20%p 가산하여 소득 및 자산기준이 완화되며, 완화 기준은 "<표3> 출산가구 자산보유기준 완화" 및 "<표5>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 완화된 소득·자산 기준을 인정받으려는 분은 출생, 입양, 임신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내용을 증명해야 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격미달일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7. 일반공급

■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25.06.13.) 현재 청주시 및 충청북도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③)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분 (주택공급신청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가능합니다.)
※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2에 따라 청약 접수일(분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이 빠른 사람의 당첨[분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함]만을 인정하며, 후 접수분은 무효 처리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이하 같음)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③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 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 기준(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소득을 말함)의 100%(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분

Ⅳ 기타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

■ **택지비 감정평가금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감정평가금액(산술평균액)	가. (주)통일감정평가법인	나. (주)경일감정평강법인
53,684,482	53,527,050	53,841,915

■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택지비 가산비					건축비 가산비										
택지비 기간이자	흙막이 공사비	말뚝박기 공사비	기타 비용	소계	법정초과 복리시설 설치비용	인텔리전트 설치 추가비용 홈 네트워크 설치비	에어컨 냉매배관	기계 환기설비	친환경 주택건설 가산비	지하 주차장 층고증가 공사비	법령 조례에 따른 추가건설 가산비 전기 자동차 충전시설	기타 비용	사업승인 조건 충족 가산비 법정초과 조경 설치비	저층부 마감특화	소계
1,471,499	2,513,147	3,417,441	67,542	7,469,629	2,334,942	3,543,582	787,540	1,376,087	1,684,129	292,782	199,876	410,136	442,177	1,460,378	12,531,629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건축 감리	소방 감리	통신 감리	전기 감리
상호	㈜청우종합건축사사무소 ㈜경동엔지니어링 ㈜다인씨엠건축사사무소 ㈜유탑엔지니어링	㈜유탑엔지니어링	㈜청우종합건축사사무소 ㈜경동엔지니어링 ㈜다인씨엠건축사사무소 ㈜유탑엔지니어링	㈜케이제이종합엔지니어링
금액	9,544,388,000			700,388,400

■ **사업주체 및 시공사 현황**

사업주체			시공업체	
한국토지주택공사 (301-82-17619)	민간사업자		코오롱글로벌㈜ (120-81-50012)	이수건설㈜ (206-81-40254)
	코오롱글로벌㈜ (120-81-50012)	이수건설㈜ (206-81-40254)		

■ **동남 하늘채 에디크 견본주택 및 공식 홈페이지 안내**

동남 하늘채 에디크 견본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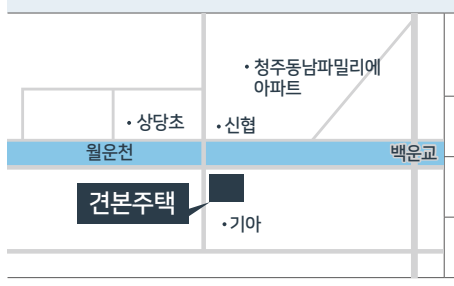

- **위치안내**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3166번지
  ※ 견본주택 주차공간이 협소해 주차가 불가할 수 있으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시간** : 10:00~17:00
- **분양문의** : 1800-4011
- **공식 홈페이지** : https://dongnam-hanulche.com